

한국고분자학회 규정

자문위원회 규정

- 제 1 조 본회 정관 제6조에 따라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칭함)를 둔다.
- 제 2 조 위원회는 다음 사업을 수행한다.
1. 학회 사업에 대한 자문.
 2. 학회 임원 선출에 대한 자문.
 3. 기금 모금에 관한 자문.
 4. 회원의 상벌에 관한 자문.
 5. 기타 학회 이사회에서 요청 받는 사항에 대한 자문.
- 제 3 조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1. 위원장 1명
 2. 위원 약간명
- 제 4 조 위원장은 학회 전임 회장 중에서 이사회에서 선출하여 회장이 위촉한다.
- 제 5 조 위원은 학회 전임 회장과 이에 준하는 경륜을 갖춘 회원 중 이사회에서 선출하여 회장이 위촉한다.
- 제 6 조 위원장은 위원회의 제반 업무를 관장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 제 7 조 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1월 1일에 시작하여 해당된 12월 31일에 만료된다.
- 제 8 조 위원장은 위원회의 주요사업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 9 조 본 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에 따른다.
- 제10조 본 규정은 이사회에서 통관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교육위원회 규정

- 제 1 조 본회 정관 제 6조에 따라 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칭함)를 둔다.
- 제 2 조 위원회는 다음 사업을 수행한다.
1. 국내외 대학(전문대학 포함) 및 대학원의 고분자 분야 교과과정과 시설 기준에 관한 조사 연구
 2. 대학 및 대학원의 고분자 관련 학과의 설치 기준 및 교육 내용의 평가방안에 관한 조사 연구
 3. 기사 1,2급 및 기술사 등의 자격 시험 제도에 관한 조사 연구
 4. 기타 고분자 교육에 관한 사항
- 제 3 조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1. 위원장 1명
 2. 위원 약간명
- 제 4 조 위원장은 학회 회원 중 이사회에서 선출하여 회장이 위촉한다.
- 제 5 조 위원은 학회 회원 중에서 위원장의 제청에 따라 회장이 위촉한다.

- 제 6 조 위원장은 위원회의 제반 업무를 관장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 제 7 조 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만료된다.
- 제 8 조 위원장은 위원회의 주요 사업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 9 조 본 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에 따른다.
- 제10조 본 규정은 이사회에서 통관된 날부터 시행한다.

편집위원회 규정

- 제 1 조 본회 정관 제 6조에 따라 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칭함)를 둔다.
- 제 2 조 편집위원회는 학술편집위원회와 기술편집위원회를 둔다.
- 제 3 조 학술편집위원회는 다음 사업을 수행한다.
1. 폴리머지 간행
 2. 기타 학술관련도서의 발간
- 제 4 조 기술편집위원회에서는 다음 사업을 수행한다.
1. 고분자과학과기술지 간행
 2. 기타 기술관련도서의 발간
- 제 5 조 학술 및 기술편집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1. 위원장 각1명
 2. 부위원장 각1명
 3. 위원 10명 내외
- 제 6 조 위원장은 학회 회원 중에서 이사회에서 선출하여 회장이 위촉한다.
- 제 7 조 학술편집위원회 부위원장은 학술편집간사로, 그리고 기술편집위원회 부위원장은 기술편집간사로 보한다.
- 제 8 조 위원은 학회 회원 중에서 위원장의 제청에 따라 회장이 위촉한다.
- 제 9 조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부위원장은 위원회의 실무를 담당한다.
- 제10조 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1월 1일에 12월 31일에 만료된다.
- 제11조 위원장은 위원회의 주요 사업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12조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 제13조 본 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에 따른다.
- 제14조 본 규정은 이사회에서 통관된 날부터 시행한다.

기금관리위원회 규정

- 제 1 조 본회 정관 제 6조에 따라 기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칭함)를 둔다.

제 2 조 위원회는 다음 사업을 수행한다.

1. 학회 기금의 효율적 관리
2. 기타 학회 자산 확장에 관한 사업

제 3 조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위원장 1명
2. 부위원장 1명
3. 위원 약간명

제 4 조 위원장은 학회 회원 중에서 이사회에서 선출하여 회장이 위촉한다.

제 5 조 위원은 학회 회원 중에서 위원장의 제청에 따라 회장이 위촉한다.

단 부위원장은 전무이사로 보하며 재무간사는 위원회의 위원이 된다.

제 6 조 위원장은 위원회의 제반 업무를 관장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 7 조 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월 1일에 시작하여 다음해 12월 31일에 만료된다.

제 8 조 위원장은 위원회의 주요 사업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9 조 본 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에 따른다.

제 10 조 본 규정은 이사회에서 통과된 날부터 시행한다.

재무위원회 규정

제 1 조 본회 정관 제 6조에 따라 재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칭함)를 둔다.

제 2 조 위원회는 다음 사업을 수행한다.

1. 학회 운영 자금의 조달
2. 학회 기금 조성
3. 기타 학회 사업의 수행을 위한 자금의 확보

제 3 조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1. 위원장 1명
2. 부위원장 1명
3. 위원 약간명

제 4 조 위원장은 학회 회원 중에서 이사회에서 선출하여 회장이 위촉한다.

제 5 조 위원은 학회 회원 중에서 위원장의 제청에 따라 회장이 위촉한다.

단, 부위원장은 전무이사로 보하며 재무간사는 위원회의 위원이 된다.

제 6 조 위원장은 위원회의 제반 업무를 관장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 7 조 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만료된다.

제 8 조 위원장은 위원회의 주요 사업을 이사회에 보고하

여야 한다.

제 9 조 본 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에 따른다.

제 10 조 본 규정은 이사회에서 통과된 날부터 시행한다.

산학협동위원회 규정

제 1 조 본회 정관 제 6조에 따라 산학협동위원회(이하 위원회라 칭함)를 둔다.

제 2 조 위원회는 다음 사업을 수행한다.

1. 대학, 연구소 및 산업계 간의 협력 증진
2. 고분자 과학 및 기술에 관한 강좌의 개최
3. 관련 기관의 견학 및 시찰

제 3 조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1. 위원장 1명
2. 부위원장 약간명

제 4 조 위원장은 학회 회원 중에서 이사회에서 선출하여 회장이 위촉한다.

제 5 조 위원은 학회 회원 중에서 위원장의 제청에 따라 회장이 위촉한다.

단, 기획간사는 위원회의 위원이 된다.

제 6 조 위원장은 위원회의 제반 업무를 관장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제 7 조 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만료된다.

제 8 조 위원장은 위원회의 주요 사업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9 조 본 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에 따른다.

제 10 조 본 규정은 이사회에서 통과된 날부터 시행한다.

용어제정위원회 규정

제 1 조 본회 정관 제 6조에 따라 용어제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칭함)를 둔다.

제 2 조 위원회는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고분자 과학 및 관련 분야의 용어 제정
2. 고분자 화학물의 명명법 제정

제 3 조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1. 위원장 1명
2. 위원 약간명

제 4 조 위원장은 학회 회원 중에서 이사회에서 선출하여 회장이 위촉한다.

제 5 조 위원은 학회 회원 중에서 위원장의 제청에 따라 회장이 위촉한다.

제 6 조 위원장은 위원회의 제반 업무를 관장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제 7 조 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만료된다.

제 8 조 위원장은 위원회의 주요 사업을 이사회에 보고하

여야 한다.

제9조 본 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에 따른다.

제10조 본 규정은 이사회에서 통과된 날부터 시행한다.

간사위원회 규정

제1조 본회 정관 제6조에 따라 간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칭함)를 둔다.

제2조 위원회는 다음 사업을 수행한다.

1. 이사회에서 의결된 사항의 집행
2. 기타 학회 일상 업무의 수행

제3조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1. 간사장(위원장) 1명
2. 총무간사(부위원장) 1명
3. 재무간사 1명
4. 편집간사 3명
5. 기획간사 3명
6. 조직간사 2명

제4조 위원장은 전무이사

또한 다른 목적에 사용하지 못한다.

제5조 부위원장 및 간사는 학회 회원 중에서 위원장의 제청에 따라 회장이 위촉한다.

제6조 위원장은 위원회의 제반 업무를 관장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위원장, 부위원장 및 간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만료된다.

제8조 위원장은 위원회의 주요 사업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 본 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에 따른다.

제10조 본 규정은 이사회에서 통과된 날부터 시행한다.

지부 및 분회 규정

제1조 본회 정관 제6조에 따라 지부 및 분회를 둔다.

제2조 지부 및 분회는 학회 정관 제4조의 사업을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수행한다.

제3조 지부는 지방별로 30명 이상, 분회는 직장별로 5명 이상의 회원이 있으면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설치할 수 있다.

제4조 지부장은 지부 규약에 따라 각 지부에서 선출하고 이사회의 인준을 거쳐 회장이 위촉한다.

제5조 분회장은 회장이 위촉하되 지부 산하의 분회장은 지부장의 제청으로 회장이 위촉한다.

제6조 지부장은 본 규정 제2조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부 규약을 제정하여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 지부장 및 분회장은 지부 및 분회의 제반 업무를

관장하고 지부 및 분회를 각각 대표한다.

제8조 지부장 및 분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월 1일에 시작하여 다음해 12월 31일에 만료된다.

제9조 지부 산하 회원의 회비는 그 3분의 1을 지부 활동비로 하고 본사가 해당 지부의 지역에 소재하는 기업으로부터 납부된 특별회비는 그 2분의 1을 지부 활동비로 할 수 있다.

제10조 지부장은 매년 12월 31일까지 소속 회원의 명단과 지부의 주요 업무 현황을 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 본 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에 따른다.

제12조 본 규정은 이사회에서 통과된 날부터 시행한다.

학회포상 규정

제1조 본회 정관 제4조 4항의 규정에 의거 고분자 학술상 및 고분자 기술상의 시상을 실시한다.

제2조 고분자 학술상은 수상 대상 기간에 고분자 과학 분야에서 탁월한 학술적인 업적을 이룩한 회원에게 수여한다.

제3조 고분자 기술상은 수상 대상 기간에 고분자 관련 기술 분야에서 탁월한 업적을 이룩한 회원에게 수여한다.

제4조 시상은 매년 춘계총회 때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적절한 수상 후보자가 없을 시에는 시상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

제5조 시상의 대상이 되는 업적은 시상 년도의 전해부터 기산하여 2년간 이룩한 업적을 기준으로 한다.

제6조 학술상 및 기술상 후보자는 시상 실시 1개월 전까지 소정의 서류를 구비하여 학회에 제출한다.

제7조 회장은 포상심사위원회 1인과 9인 이내의 위원을 임명하고, 포상심사위원회에서 수상자를 심의 결정한다.

제8조 본 규정의 시행에 소요되는 경비 및 시상의 규모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다.

제9조 포상심사위원회는 수상후보자의 심사 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을 제정하여 심사에 임한다.

제10조 본 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에 따른다.

부 칙 1. 본 규정의 실시 시기는 이사회에서 정한다.

평의원회 규정

1. 본회 정관 제23조에 따라 평의원회를 구성한다.

2. 평의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 1) 임원 후보자의 제청
- 2) 학회상 시상에 관한 사항
- 3) 명예회원의 승인

- 4) 기타 주요 사항
3. 평의원은 이사회에서 후보자를 선정하여 총회의 의결로서 선임된다.
4. 평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다만, 창립총회에서 선임된 평의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5. 평의위원회는 다음 각 항의 1에 해당할 때 회장이 7일 전까지 그 목적 사항을 기재한 통지서를 발송하여 소집한다.
 - 1) 이사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였을 때
 - 2) 평의원 3분의 1이상으로부터 요구가 있을 때
6. 평의원 회의의 의장은 회장이 되며 평의원수의 3분의 1이상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수로서 의결한다.

논문투고 규정

(1977. 1. 10 제정)

(1986. 2. 26, 1987. 3. 12 개정)

1. 본 규정은 본회 정관 제4조에 의거하여 간행되는 회지에 투고하는 규칙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논문의 본 회지에 투고하기 전에 다른 잡지에 논문으로 발표되지 아니한 것이어야 한다.
3. 논문의 투고는 회원에 한한다. 공동연구자 또는 초청 투고자는 예외로 한다.
4. 논문의 접수일은 논문이 본회에 도착한 날로 한다.
5. 논문 작성은 국어(한글)를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나, 영어, 독어 및 불어도 사용할 수 있다.
6. 논문의 원고는 원본 1부와 사본 2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된 원고는 저자에게 반환하지 아니한다.
7. 논문의 서식은 가로쓰기로 하고 약 $21 \times 28 \text{cm}^2$ 크기의 용지에 한줄 건너 한면에만 타자하며, 논문의 분량은 표와 그림 등을 포함하여 15면 이내이어야 한다. 단, 원고지를 사용하는 경우 200자 원고지 50매 이내이어야 한다.
8. 원고는 다음 항목별로 별면에서 시작하여야 한다.
 - (1) 제목, 저자명, 소속기관명 및 주소(논문작성에 사용한 언어에 관계없이 국어와 외국어로 써야 하며, 저자의 현 소속기관이 연구당시와 다른 경우에는 현 소속기관 및 주소를 각주에 표시하여야 한다)
 - (2) 국문초록(400자 이내) 및 영문초록(150자 이내)
 - (3) 본문
 - (4) 인용문헌
 - (5) 표
 - (6) 그림
9. 국어 논문의 경우 학술어는 원칙적으로 한국고분자학회가 제정한 용어를 사용하여야 한다(고분자 용어집 참고).

외국어 논문의 경우 화학술어는 Chemical Abstracts에서 채택하고 있는 규칙을 따르도록 권장한다.
10. 모든 표와 그림의 설명에는 영어를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모든 표는 약 $21 \times 28 \text{cm}^2$ 크기의 백지에 명료하게 작성하고 그 표 내의 긴 단어는 적당한 약어로 대체하고 표에 사용한 약어에는 정의를 주어야 한다. 모든 표는 아라비아 숫자로 일련번호를 붙여야 한다(예: Table 1).

11. 그림 원본은 켄트지 또는 트레이싱지(약 $21 \times 28 \text{cm}^2$)에 깨끗이 흑색으로 그려야 하며, 그림의 설명은 별지에 모아서 적어야 한다. 그림의 선의 굵기와 그림에 삽입된 글자의 약 1/2로 축소된 후에도 명료하게 읽을 수 있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모든 그림은 아라비아 숫자로 일련번호를 붙여야 하며(예: Fig. 3), 그 번호를 그림의 뒷면에 연필로 적어두어야 한다.
12. 본문, 그림 및 표에 사용된 약어나 시료기호 등은 그것이 처음 사용된 곳에서 한번만 정의해 주어야 한다. (예: Polyethylene(PE) 또는 solution of polystyrene in diethyl oxalate(PS/DEO))
13. 단위는 SI 단위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4. 동일한 실험결과를 그림과 도표에 중복하게 표현하는 것을 가급적 피하여야 한다.
15. 인용된 문헌을 본문에 표시하기 위해서는 해당되는 문구의 우측 어깨에 아라비아 숫자로 그 인용문헌의 번호를 표시한다(예: 이미 보고된 결과와⁵ 일치하는...)
16. 인용된 참고문헌들은 영문표기를 원칙으로 하고 본문에 인용된 순서대로 일련번호를 붙인다.
17. 인용문헌이 학술잡지인 경우에는 다음의 형식에 맞추어 기입하되, 잡지명 밑에 ~의 줄을 긋고, 권을 표시하는 숫자 밑에는 밑줄을 그어야 한다.

저자명, 학술잡지명, 권, 쪽(발행년도).

예: 1. M. L. Williams, R. F. Landel, and J. D. Ferry, *J. Am. Chem. Soc.*, **77**, 3701 (1955).

2. F. F. Rust and W. E. Vaughan, *U. S. Patent* 2,392,294 (1946).
18. 인용문헌이 단행본인 경우에는 다음의 형식에 맞추어 기입하여야 한다.

저자명, "책이름", 판수, 편집자명, 권, 쪽, 출판사명, 출판사 소재지, 년도.

단, 판수 및 편집자명, 권등에 해당사항이 없을 때에는 이들을 생략한다.

(예: E. Jenckel, "Del Physik der Hochpolymeren", ed. by H. A. Stuart, vol. III, p. 621, Springer-Verlag, Berlin, 1957).
19. 연구가 간단하나 중요한 결과는 이를 속보(Communications 또는 Letters) 또는 단신(Notes)으로 투고할 수 있다.
20. 투고시에는 소정의 심사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게재 후에는 소정의 게재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논문심사 규정

1. 논문의 심사 및 채택은 본 규정에 따른다. 단신(Notes), 속보(Communication과 Letter)도 논문으로 취급한다.
2. 논문의 심사는 2명의 심사위원에게 의뢰한다. 심사위원은 학술편위원회에서 선정하며 그 명단은 발표하지 않는다.
3. 심사결과는 "채택가"(무수정, 수정후 채택)와 "수정후 재심"과 "채택불가"로 판정한다.
 - (1) "채택가"중 "무수정"으로 판정된 논문은 수정없이 채택한다.
 - (2) "채택가"중 "수정후 채택"으로 판정된 논문은 심사위원이 지적한 사항을 저자가 수정 보충한 후 재심없이 채택한다.
 - (3) "수정후 재심"으로 판단된 논문은 심사위원이 지적한 사항을 저자가 수정 보충한 후 원 심사위원에게 재심을 받는다.
4. 심사내용은 저자에게만 통보하고 공표하지 않는다.
5. 논문의 내용이 아래의 어느 항에 해당된다고 심사위원이 인정할 경우에는 "수정 필요"로 판정하고 해당사항을 구체적으로 심사평란에 지적하여 이를 수정 또는 보충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 (1) 내용의 서술이 분명하지 아니할 경우
 - (2) 그림과 표에 관한 표시 또는 설명이 불충분하거나, 분명하지 아니할 경우와 일관성 없는 경우
 - (3) 그밖에 수정, 보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6. 논문의 내용이 아래의 어느 항에 해당된다고 심사위원이 인정할 경우에는 "채택 불가"로 판정하고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심사평란에 재적하여야 한다.
 - (1) 독창성이 뚜렷하지 아니할 경우
 - (2) 저자가 연구한 결과와 타인이 이미 연구한 결과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없는 경우
 - (3) 기타 본 회지에 게재하기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7. 논문이 논문투고규정에 맞지 않다고 학술편집위원회에서 인정할 경우에는 이를 접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8. 외국어로 작성된 원고로서 문맥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문법적으로 그 해독이 곤란할 경우에는 편집위원회 또는 심사위원이 저자에게 수정을 요구하거나 국문으로 작성하여 재 투고할 것을 권장할 수 있다.
9. 심사위원 중 1명이 "채택가", 다른 1명이 "채택불가"로 판정하였을 경우에는 학술편집위원장은 제 1,2 심사위원들의 심사평을 첨부하여 통보하고, 제 3 심사위원의 선정을 의뢰한다. 이 경우 제 3 심사위원이 "채택가"나 "채택불가"로 판정하면 이 판정에 따라 논문을 처리한다.
10. 심사위원은 심사 위촉 후 15일 이내에 위촉받은 논문을 심사하고, 판정결과와 심사평을 원고와 함께 본 학회에 반송하여야 한다.

11. 심사위원이 심사 위촉 후 30일 이내에 심사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심사의뢰를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원고는 즉시 본 학회로 반송하여야 한다.

KOREA POLYMER JOURNAL 편집위원회 규정

- 제 1 조 본회 정관 제 6조에 따라 KOREA POLYMER JOURNAL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칭함)를 둔다.
- 제 2 조 위원회는 다음 사업을 수행한다.
 1. 영문지의 간행
 2. 기타 영문도서의 발간
- 제 3 조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위원장 1명
 2. 부위원장 1명
 3. 위원 20명 이내
- 제 4 조 위원장은 학회 회원 중에서 이사회에서 선출하여 회장이 위촉한다.
- 제 5 조 당해년도 영문지 편집간사는 당연직 위원이 된다.
- 제 6 조 부위원장 및 위원은 학회 회원중에서 위원장의 제청에 따라 회장이 위촉한다.
- 제 7 조 위원장은 위원회의 제반 업무를 관장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 8 조 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1월 1일에 시작하여 당해년도 12월 31일에 만료된다. 단, 초대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위원회가 구성되는 날로부터 다음해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제 9 조 위원장은 위원회의 주요사업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10조 본 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에 따른다.
- 제11조 본 규정은 이사회에서 통과된 날부터 시행한다.

Korea Polymer Journal 투고규정

Scope of Journal

Korea Polymer Journal publishes original research on all aspects of polymer science, engineering, and technology, which have not been or are not to be published elsewhere. Papers include Articles, Communications, and Notes. Articles are comprehensive reports of significant results and should have high scientific quality and originality. Communications should be preliminary reports of unusual urgency and significance. A more complete paper may be published at a later date. A Note deals with a limited subject which requires no further elaboration in the future. The length of both Communications and Notes should be less than 1500 words. The title and au-

thors' names and literature references are not counted.

Preparation of Manuscript

Four copies of the manuscript should be submitted to the Editor. Manuscript should be typewritten or reproduced on a high-quality printer double-spaced, on 22×28 cm paper on one side only. A signed copyright status form should be included. Authors should present their work in concise and clear English. The name of the author to whom inquiries about the paper may be addressed and should be marked with an asterisk. An abstract should be provided for Articles, Communications, and Notes. Abstracts should explain briefly the reason for the work, the significant results, and conclusion. Other subheadings, such as Introduction, Experimental, Results, Discussion, and References, should be flush left and in boldface type or underlined, with initial capitalization only. All pages should be numbered consecutively, including reference and notes, figure captions, and tables, grouped in that sequence following the text. Original copies of graphs, drawings, structural formulas and photographs should be included at the end of the manuscript and authors should indicate in the typeset where these are to be inserted. Figures and graphs should be carefully prepared line drawings and only the originals and high-quality reproductions are acceptable. Symbols and lettering (typewriter labeling is unacceptable) should be compatibly sized for optimum reproduction. References to the literature should be numbered in one consecutive series. Reference numbers in the text should be typed as unparenthesized superscripts, but enclosed in parentheses in the reference section following the text. References should be arranged and punctuated as follows:

- (1) P. F. Green, T. M. Christensen, and T. P. Russell, *J. Chem. Phys.*, **92**, 1478 (1990).
- (2) P. C. de Gennes, *Scaling Concepts in Polymer Physics*, Cornell Univ. Press, Ithaca, 1979.
- (3) S. Dietrich, in *Phase Transitions and Critical Phenomena*, C. Domb and J. Lebowitz, Eds., Academic Press, London, 1988, Vol. 12, pp 1-218.

Authors are advised to use systematic names similar to those used by Chemical Abstracts Service of IUPAC. Chemical Abstracts rules are contained in Appendix IV of the current Chemical Abstracts Index Guide.

Proofs and Reprints

Original manuscript, galley proofs, and reprint order forms are sent to the author. Proofs should be checked against the manuscript and returned as soon as possible, along with the filled-out reprint order form. All orders must be filled before press time and bills are issued subsequent to reprint shipment, which are made within a month of publication.

Page Charge

In order to defray in part the cost of publication a page charge is assessed. However, payment of page charges is not a condition for publication of the paper. The decision as to whether or not to publish the paper is made solely on the basis of merit by the Editor before the charge is assessed.

Journal Address

Editor
Korea Polymer Journal
The Polymer Society of Korea
Room #601, Hatchon Building
831 Yeoksam-dong, Kangnam-ku
Seoul 135-792, Korea

부문위원회 규정

(1991. 3. 14 제정)

- 제 1 조 본회 정관 제 6조에 따라 부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칭함)를 둔다.
- 제 2 조 위원회는 해당 전문분야에 관심을 가진 20명 이상의 정회원이 있으면 구성할 수 있다.
- 제 3 조 위원회는 10명 이상의 정회원이 발기하여 설립취지와 사업계획서를 학회에 제출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설립할 수 있다.
- 제 4 조 위원회는 학회의 전문분야별 활동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해당 전문분야의 교육, 연구 및 기술개발에 관련된 워크숍, 세미나, 심포지움 등의 개최
 2. 전문성을 가지는 뉴스레터의 발간
 3. 춘계 및 추계 연구 논문 발표회의 특별강연, 연사 추천, 발표장의 좌장 추천 및 발표장 운영에 관한 협조
 4. 기타 위원회에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을 사항과 이사회에서 의뢰하는 전문적인 업무
- 제 5 조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1. 위원장 1명
 2. 간사 1명
 3. 운영위원 약간명
- 제 6 조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선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
- 제 7 조 간사 및 운영위원은 위원장이 임명한다.
- 제 8 조 위원장은 위원회의 제반 업무를 관장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 제 9 조 위원회의 위원장, 간사 및 운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월 1일에 시작하여 다음해 12월 31일에 만료된다.
- 제 10 조 위원회의 회원은 본학회 정회원으로 소정의 입회

원서를 제출하고 위원회에서 정하는 회비를 납부한 자로 한다.

- 제11조1. 위원장은 매 회계년도 개시후 1개월 이내에 해당 년도의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에 승인을 받는다. 이 때 회원명단을 함께 제출한다.
2. 위원장은 위원회의 활동사항의 내용 또는 결과를 매년 1회 이상 “고분자과학과 기술”지에 게재한다.

제12조1. 부문위원회별 운영예산은 특별회계로 취급한다.

2. 각 위원회 위원장은 매 행사 종료후 및 년도말에 예산집행 실적을 총괄하여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사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시에는 그 내용을 총회에 보고한다.

제13조본 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에 따른다.

제14조본 규정은 이사회에서 통과된 날부터 시행한다.